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정재・이종배・박충권

박덕흠 • 박정하 • 김은혜

곽규택 • 이상휘 • 김선교

김성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·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이 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·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특히,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·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·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

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	세액공제) ①
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	
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	
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	
제1호 및 제2호는 <u>2024년 12월</u>	<u>2034년 1</u>
<u>31일</u> 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	2월 31일
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	
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	
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	
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	
하나만을 적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